서울특별시공고 제2025-3067호

「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」 변경계획 공고

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계획을 공지하고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. 10. 31.

서 울 특 별 시 장

[주요 변경사항]

□ 출산(입양)가구 및 난임가구 대출기간 연장(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 시)

○ 출산(입양)가구 : (기존)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(최장 10년 이내)
(변경) 자녀 1명당 4년씩 연장(최장 12년 이내)

○ 난임가구 : 2년 연장, 연장기간 중 자녀 출산 시 4년 연장(최장 10년 이내)

□ 월세 여부에 따른 임차보증금(7억) 기준 명확화

○ 월세가 '없는' 임대차계약 :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

○ 월세가 '있는' 임대차계약 : 전월세 전환율을 반영한 '환산 임차보증금'적용

- 환산 임차보증금 = 월세보증금 + (월세 × 12개월÷전월세 전환율)

※ 출산(입양)가구 및 난임가구 대출기간 연장 : '25. 11. 20.(목) 이후 신규 대출신청 및 대출연장 신청 건부터 적용(기적용된 자녀에 대한 소급 적용 불가)

※ '환산 임차보증금' 적용 : '25. 11. 20.(목) 이후 추천서 발급 신청자부터 적용

1. 사업개요

□ **사 업 명:**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

□ **사업목적**: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보증금의 대출 이자 지원 및 신규 대출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□ **대출지원 조건**

- ㅇ 대출 취급은행 : 국민은행, 하나은행, 신한은행
- ㅇ 대출 최대한도 : 최대 3억 원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
※ 협력은행 자금으로 대출 실행, 서울시에서는 대출 이자 일부 지원

□ **대출용도**: 임차보증금(전월세보증금)

※ 당해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[4. 신청안내] 참조

2. 신청자격

□ **신청대상자**: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
- ㅇ 서울시민이거나 최초 대출 실행일 기준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
- ㅇ 대출신청일[주1)]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[주2)]

주1)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,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

주2)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**혼인관계증명서**를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함

- ㅇ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
- ㅇ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[주)]

주) 붙임1.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주택수 산정기준 관련 내용 참고

※ 대출명의자(=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=추천서 신청자)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,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 요건은 FAQ 23페이지 참고

- ㅇ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

※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생애 최초 1회만 지원

※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수혜자(배우자 포함)는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

□ **대상주택**: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

ㅇ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[주3)]

- 월세가 '없는' 임대차계약 :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
- 월세가 '있는' 임대차계약 : 전월세 전환율을 반영한 '환산 임차보증금' 적용

※ 환산 임차보증금(천원단위이하 절사) = 월세보증금 + (월세 × 12개월 ÷ 전월세 전환율[주4)])

※ (예시) 전월세 전환율(5.5%) 적용 시 대상주택 충족여부

구분	전세	보증부월세			
보증금	7억원	6억원	**6억원**	5억원	**5억원**
월세	-	440,000원	**550,000원**	880,000원	**990,000원**
월세환산보증금액	-	9천6백만원	**1억2천만원**	1억9천2백만원	**2억1천6백만원**
환산 임차보증금	7억원	6억9천6백만원	**7억2천만원**	6억9천2백만원	**7억1천6백만원**
대상주택 충족여부	○	○	**×**	○	**×**

※ 전월세 전환율은 추천서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

※ '환산 임차보증금'은 '25.11.20.(목) 추천서 발급 신청자부터 적용(신규 대출 시 적용, 대출연장 시 적용 제외)

※ 대출가능 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(환산임차보증금 미 반영)을 기준으로 하며,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임

주3) 「노인복지법」 부칙 제4조의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「건축법」에 따른 허가나 「주택법」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

주4) 최근 6개월간 지역별(서울)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으로 6개월 주기로 변경(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 공지)

< 필 독 >

* **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(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)**
* **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**
* **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[주5)]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**

주5)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서울주택도시공사(SH), 서울리츠(REITs), 공무원연금공단 등

3. 대출 및 이자지원

□ 대출신청시기

ㅇ 신규: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

ㅇ 계약갱신: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

※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(대출실행일) 2개월 전부터 가능함

□ 대출한도

ㅇ 최대 3억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
※ 단,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 (국민, 하나, 신한은행)에서 사전상담 필요

※ 대출 연장 또는 임대 물건지 변경 시 대출금 증액 불가

□ 대출금리: ① 기준금리 + ② 가산금리

① 기준금리(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)　② 가산금리(1.45%)

※ COFIX금리 :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

□ 본인 부담금리: 대출금리 - 이자지원금리 = 실부담금리

□ 보증방식

ㅇ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(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)

※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의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

□ 이자지원금리: 최대 연 4.5% 이하

※ 본인 부담금리가 연 1.0%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.0% 적용

ㅇ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: 최대 연 3.0% 이하

부부합산 연소득 구간	지원금리
0 ~ 3천만원 이하	3.0%
3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	2.5%
6천만원 초과 ~ 9천만원 이하	2.0%
9천만원 초과 ~ 1억 1천만원 이하	1.5%
1억 1천만원 초과 ~ 1억 3천만원 이하	1.0%

○ 추가 이자지원금리 : 최대 연 1.5% 이하

①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: 0.2%

② 다자녀가구 : 1자녀 0.5%, 2자녀 1.0%, 3자녀 이상 1.5%

③ 혼인 이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: 1.0%

※ ① ~ ③ 유리한 금리 조건 택일(중복 적용 불가)

※ ①은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연장 시 적용 안됨

※ ②는 최초 신청 시 임신 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, 기한연장 시 총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(단, 신청시점에 임신중인 자녀로 추가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한연장 불가)

※ 지원대상 자녀 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 기준인 만 19세 미만임

- 최초 신청 시 : 서울시 대출추천서 발급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
- 기한연장 시 :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만 19세 미만

※ ③은 신규 신청은 대출 신청일[주1] 기준, 대출 연장은 (만기일+1일)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의 동거기간(전입 기간)이 3년 이상 인지 확인

주1)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,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

□ **이자지원 기간 : 최장 12년 이내 (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)**

○ 기본지원은 2년+2년 이내 (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)

※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는 기본지원(2년 + 2년) 대출이용 후 대출 상환

○ 대출기간 중 출산·입양[주2] 등으로 자녀 수가 증가한 경우 자녀 1명당 4년(2년+2년)씩 최장 8년 이내 연장지원('25. 11. 20(목) 이후 신규 대출신청 및 대출연장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, 기적용된 자녀에 대한 소급 적용 불가)

주2) ※ 입양 자녀 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 기준인 만 19세 미만임

- 최초 신청 시 : 서울시 대출추천서 발급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
- 기한연장 시 :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만 19세 미만

○ 대출기간[주3] 중 무자녀 가구가 난임시술 증빙[주4]을 제출한 경우 최장 2년 이내 연장 가능하며, 난임으로 인한 대출 연장 기간 중 자녀 출산·입양 등의 경우, 최장 4년 (2년+2년) 이내 추가 연장지원

주3) 기본지원 2년+2년 기간에 한함

주4) 기존 대출 만기일 기준 1년(응당일) 이내(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기준)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시술일자와 시술내역(인공수정, 체외수정)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 첨부

※ '25. 11. 20.(목) 이후 신규 대출신청 및 대출연장 신청 건부터 적용

ㅇ 이자지원 중단사유

대출기간 중	기한연장 시
① 예비신혼부부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(중단일 :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) ②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(중단일 : 주민등록 전출일)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(중단일 : 주민등록 전출일) ④ 임대차계약 종료 (중단일 : 임대차계약 종료/전출일) ※ ①~④의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됨	①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초과 ②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③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④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
※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,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※ 단, 위의 기한연장 중단사유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주주택의 임차보증금 주5)상승으로 주택 조건(임차보증금주5) 7억원)이 초과된 경우, 임차보증금이 7억3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'1회'에 한해 기한 연장 가능('25.11.20(목)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)

주5)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차보증금(환산임차보증금 미 반영)을 기준으로 함

※ 대출 실행 후 주택 취득 시 대출상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FAQ를 반드시 참고

□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

ㅇ 적용 대상자: ① ~ ④ 모두 만족한 자(유주택자 제외)

①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중

②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연장 불가일 경우

-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초과, 이혼·사별, 자녀 미출산, 서울 지역 외 전출, 공공임대주택 입주

③ 전세사기,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서,

④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·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

ㅇ 지원사항

- 임차권등기명령 시 : 기존 이자 지원 지속
- 소송·경매 진행 시 : 무이자 (서울시 이자 전액 부담)

※ 소송·경매 진행 중이라도 대출만기 도래 전이면 무이자 지원으로 변경 불가

ㅇ 증빙서류: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, 경매/공매 개시 결정문, 소송접수 증명원, 등기부등본(임차권등기명령, 경매진행사항 등 기재) 등 ※하단표 참고

□ 공통 서류

ㅇ 주민등록 등·초본(1개월이내 발급분),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, 계약해지 통보서류(내용증명 등), 등기부등본(1개월이내 발급분)

□ 유형별 서류

ㅇ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경우 (아래 각 호 중 하나)

1. 임차주택에 대한 **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** (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)

   ※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제출 시 대출연장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

2.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**법원결정문 사본**
3.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**등기부등본**

ㅇ 임차주택에 경매/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(아래 각 호 중 하나)

1. **경매/공매 개시 결정문** 또는 **경매/공매 통지서**
2. 압류 및 경매/공매개시결정 또는 공고가 기재된 **등기부등본**
3. **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서,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접수증명원**
4. **매각물건명세서** (주거임차인으로서 점유자 성명, 임대차기간, 보증금, 전입일자, 확정일자, 배당요구일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)

ㅇ 임차주택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(아래 각 호 중 하나)

1. **소송접수 증명원** / 2. **소송 계속 증명원** / 3. **소제기 증명원**

○ 기타사항

- **소송,경매의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선행 후** 소송·경매 절차 진행 필요
- 보증금 미반환 관련 소송·경매 사유는 **임차인 본인이 직접 진행한 것에 한함**
- 대출연장은 6개월 단위로 은행에서 진행(관련 서류) 사항 확인 후 최대 4년 연장 처리

※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연장은 최대 2회(1회당, 6개월 이내) 가능하고 그 이후는 반드시 소송 경매 절차 등 법적절차가 진행되어야 함

- 최대 지원 기간(4년) 경과 및 법적 절차 진행 종료 시 즉시 상환

4. 신청안내

□ 신청절차

단 계	주 체	단계별 주요내용
대출한도 조회 등 사전상담	신청자	가까운 협약은행 지점 방문 본인 대출신청 가능금액 및 소득요건 등 대출관련 사전상담
임대차계약	신청자	대출한도, 대출가능여부 등 협약은행 상담결과를 고려하여 임차 주택 조사, 임대차계약 체결
추천서 발급 신청	신청자	서울주거포털(온라인)에 접속하여 신청자 개인정보 등 입력 후 대출추천서 발급 신청 *** 추천서 신청 서류** 주민등록등본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임신사실확인서(임신중인 경우),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영수증
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 발급	서울시	첨부서류 확인 등 자격 검토 및 추천서 발급 (근무일 기준 3일 내외 소요)
대출신청	신청자	서울시 발급 추천서와 본인 신분증, 소득 증빙자료, 임차주택 계약서 등 지참, 은행에 대출 신청 *** 대출 신청 서류** 대출 추천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영수증,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재직증명서(사업자등록증명원)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소득금액증명) 등
대출심사	협약은행	추천서, 기타 제출 자료 등 검토 및 주택 심사 후 대출 승인여부 결정 (1개월 내외 소요)
전세자금보증	한국주택금융공사	협약은행이 검토한 대출신청자 자격 및 대출심사 내용을 토대로 적합할 경우 전세자금보증 확정
대출금 입금	협약은행	은행 최종 대출심사 결과 승인 시 입주일에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

※ 대출 연장 시에는 서울시 추천서를 다시 신청·발급하지 않아도 되며, 추가 발급 불가능
※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 기준 2개월 전, 은행 대출(대출 연장도 동일) 접수는 1개월 전 부터 가능 (협약은행의 상황에 따라 대출실행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)

□ **추천서 신청기간** : 상시

※ 일일 신청건수(60건) 초과 시 당일 신청 불가, 익일 신청할 수 있음

□ **추천서 접수방법 : 서울주거포털 사이트** (http://housing.seoul.go.kr)

□ **신청서류** *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**(열람용 불가)**

① **주민등록등본(상세) 1부(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)** *세대주와의 관계 '상세' 발급분

② **가족관계증명서 1부(신청자, 배우자 각 1부)** *특정 아닌 '일반' 또는 '상세' 발급분

③ **혼인관계증명서 1부(신청자/단,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, 배우자 각 1부)**

※ 단, 예비신혼부부 상태에서도 발급가능하며, 신청자,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, 예식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관계증명서[주] 제출 필요

[주] 혼인신고 접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며, 혼인관계증명서 발급까지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④ **임대차계약서[계약금(보증금의 5% 이상) 지급 영수증 포함] 1부**

※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

※ 추천서 심사 및 협약 은행의 대출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□ **문 의 처**

ㅇ 대출문의(대출한도,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, 소득조건) : 협약은행 콜센터 (국민은행 ☎ 1599-9999, 하나은행 ☎ 1599-2222, 신한은행 ☎ 1599-8000)

ㅇ 서울주거포털 이용 문의(서울주거포털 오류,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) : 다산콜센터 (☎ 02-120),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(☎ 02-2133-1200~8, 내선번호 2번)

5.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□ **지원 대상자** : 본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
ㅇ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규 대출자(생애 1회)

ㅇ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

○ 대출 신규일로부터 90일 이내[주1] 보증료 지원 신청한 자

[주1] 90일 도래일이 휴일인 경우, 휴일의 그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

※ 대출 신규일은 은행 발급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확인 예정

※ 본 대출은 서울시-협약은행-한국주택금융공사(HF) 간의 협약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HF 반환보증 상품만 지원 가능하며 타 기관(HUG, SGI) 상품은 제외

※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대출 완료 후, 대출 실행 은행에서 상담 및 신청

지원 제외대상

- **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**
  -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 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여부 확인 가능
- **기타 국토교통부, 자치구 등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**
  -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및 자치구 자체 지원사업 중복 청구 불가
    거주 자치구에 지원 사실 통보 예정이며 중복 수령 시 환수 조치

□ 지원 내용 :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(최대 30만원 한도, 연도별 예산 소진 시까지)

□ 신청방법 : 서울주거포털(housing.seoul.go.kr) 홈페이지 신청

- 서울주거포털 접속 및 로그인 → [화면상단] 청년·신혼부부 지원 → 신혼부부 반환보증료→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→ 신청자격 확인 → 약관동의 → 개인정보 및 구비서류 등록 → 신청 완료(카톡알림) → 신청에 따른 지급 승인 여부 통보(마이페이지)

※ 신청일 기준 지급 승인 등 결과 통보는 3일 내외(근무일 기준) 소요되며 서류 미비 시 승인 거부 및 제출 서류 보완 가능

※ 단, 근무일 기준 1일 심사 건은 40건 내외로 신청이 많을 경우 결과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

□ 제출서류

- 금융거래확인서,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(전세지킴이보증서),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영수증, 대출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, 주민등록등본(상세),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사항증명서

< 서류발급처 >

- **금융거래확인서 : 대출 실행 은행**
- **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영수증 : 대출 실행 은행 직접 방문 수령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홈페이지에서 발급**
- **주민등록등본(상세) :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**
- **등기사항전부증명서 : 지방법원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(일부 동주민센터 발급 가능)**

□ **지급일자** : 지급 승인 일 기준 익월 20일(휴일인 경우, 휴일의 그 다음 근무일)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

□ **신청 및 절차** *대출 완료 후 대출 실행 은행 방문하여 반환보증 가입 신청 가능

단 계	주요내용	일 정
① **대출 실행** (협약 은행)	‣ (은 행) 대출 실행 ‣ (신청자) 금융거래확인서 수령	대출 승인일
② **반환보증 가입 신청** (신청자→은행)	‣ (신청자) 반환보증 신청 ‣ (은 행) 반환보증 상담	대출 승인 이후
③ **보증심사 및 통보** (한국주택금융공사)	‣ (공 사) 보증심사 및 통보	30일 내외 소요
④ **보증료 납부** (신청자→은행)	‣ (신청자) 보증료 납부 ‣ (은행/공사) 보증서, 영수증 배부	보증 승인일
⑤ **보증료 지원 신청** (신청자→서울시)	‣ (신청자) 서울주거포털 신청	대출 승인 이후 90일 이내
⑤ **지원 심사 및 통보** (서 울 시)	‣ (서울시) 지원 심사 및 통보	근무일 기준 3일 내외 소요
⑦ **지원금 지급** (서울시→신청자)	‣ (서울시) 지원금 지급	승인완료일 익월 20일 지급

□ **문 의 처**

ㅇ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의 : 협약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

(국민은행 ☎ 1599-9999, 하나은행 ☎ 1599-2222, 신한은행 ☎ 1599-8000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콜센터 ☎ 1688-8114)

ㅇ 보증료 지원 문의 : 서울시 주택정책과(2133-7026)

6. 기타사항

- ㅇ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ㅇ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으며,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 합니다.
- ㅇ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연소득, 부채현황, 기존 대출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ㅇ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 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 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ㅇ 은행 사정에 따라 대출 및 연장 신청일로부터 대출 실행까지 1~2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 대출 실행일로부터 촉박하게 대출 신규 신청을 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거나 적기 시행이 안될 수 있으며, 대출 연장 시에도 만기일로부터 촉박하게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대출 연체 및 신용도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ㅇ 대출 약정 기간 종료 전 대출금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- ㅇ 주택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ㅇ 허위·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거나 동일 건으로 국토교통부, 자치구 보증료 지원을 중복 청구 시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ㅇ 기타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(국민은행 ☎ 1599-9999, 하나은행 ☎ 1599-2222, 신한은행 ☎ 1599-8000)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(☎ 02-120),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(☎ 02-2133-1200~8,내선번호 2번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FAQ
2.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